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행위 - 의료법위반 유죄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 노 176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에서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의사 B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안과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2. 의료법 규정, 쟁점 및 법리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구 의료법 제32조의4 제2항과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2항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진료는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매주 일정한 요일에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개설자 본인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 1114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로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 두 8959 판결 등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 750 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3. 1 심 판결 요지 - 의료법 위반 불인정

4. 항소심 판결 - 의료법 위반 인정 + 유죄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안과위원이 아닌 B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일정 기간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안과 수술을 집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상 의료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1766 판결